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605호

「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소년소녀가정 지침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고,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포함(안 제7조)
- 나.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무상지원 기간 연장(안 제7조)
- 다. 사업시행자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및 만나이 삭제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
- 팩 스 : 044-201-5572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(전화 044-201-4479, 45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